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6302    |
| 의 퇴 인 | 김성원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1.15. |
| 추계번호  | 24D5807    |

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92억 2,500만원(연평균 98억 4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| 3,666 | 7,024 | 10,106 | 12,928 | 15,502 | 49,225 | 9,845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9조<br>(권리의 보호) 단서 신설 |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. 다만,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| 안 제19조<br>(권리의 보호) 단서 신설 | 0 | -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최근 5년간 무공수훈자수 증감률과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,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인원을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 - 무공영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의 경우,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2026년 이후 사망자부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### 가. 무공영예수당의 배우자 승계(안 안 제7조의3제3항)

#### (1) 개요

-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임
-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등급에 따라 2023년 기준 45만원~47만원 수준으로 매년 5.7%의 증가율을 보임

[표 2]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단가 현황

| 구분        | 2019    | 2020    | 2021    | 2022    | 2023    | 연평균증가율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지급인원(명)   | 14,730  | 13,206  | 12,148  | 10,752  | 9,483   | -10.4  |
| 월지급단가(천원) | 360~380 | 380~400 | 400~420 | 410~430 | 450~470 | -      |
| 총지급액(백만원) | 64,218  | 60,746  | 58,873  | 53,238  | 51,507  | 2.4    |
| 평균 월지급단가  | 363     | 383     | 404     | 413     | 453     | 5.7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## (2) 지원대상 및 지급단가

- (지원대상) 2023년 기준 무공수훈자 수에 최근 5년간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무공수훈자 수를 추정한 후, 연도별 무공수훈자 감소인원을 사망인원으로 간주하고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를 적용하여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추정한 후, 전년도 미망인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8.1%를 적용하고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적용하여 미망인 누계를 추정
  - 신규 무공수훈자가 최근 5년간 5명으로 신규인원 비중이 적어 연도별 무공수훈자 감소인원을 사망인원으로 간주

[표 3] 무공영예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| 구분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연평균증가율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무공수훈자 수     | 6,821 | 6,112 | 5,476 | 4,906 | 4,396 | -10.4  |
| 무공수훈자 사망인원  | 792   | 709   | 636   | 570   | 510   | -10.4  |
| 신규미망인 발생인원  | 571   | 511   | 459   | 411   | 368   | -10.4  |
|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 | 571   | 1,036 | 1,411 | 1,707 | 1,937 | -      |

- 주: 1) 무공수훈자 수는 2023년 무공수훈자 수에 최근 5년간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, 전년도 무공수훈자 수에서 다음연도 무공수훈자수를 감하여 사망인원을 추정  
 2)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은 무공수훈자 사망인원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를 적용  
 3)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는 2026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최초 수급권 승계 배우자로 가정한 후, 다음연도부터 전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에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.1%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합산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지급단가) 2023년 기준 무공영예수당 평균 월 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무공영예수당 평균 월 지급단가를

## 추정

[표 4]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단가 현황

| 구분        | 2019    | 2020    | 2021    | 2022    | 2023    | 연평균증가율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지급인원(명)   | 14,730  | 13,206  | 12,148  | 10,752  | 9,483   | -10.4  |
| 월지급단가(천원) | 360~380 | 380~400 | 400~420 | 410~430 | 450~470 | -      |
| 총지급액(백만원) | 64,218  | 60,746  | 58,873  | 53,238  | 51,507  | 2.4    |
| 평균 월지급단가  | 363     | 383     | 404     | 413     | 453     | 5.7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5]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단가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천원, %)

| 구분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연평균증가율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평균 월지급단가 | 535  | 565  | 597  | 631  | 667  | 5.7 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추계결과) 무공영예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에 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92억 2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| 구분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급대상(명)     | 2,372 | 4,749 | 7,147  | 9,581  | 12,068 | -      |
| 월 지급단가(천원)  | 841   | 879   | 919    | 960    | 1,003  | -      |
| 추가재정소요(백만원) | 3,666 | 7,024 | 10,106 | 12,928 | 15,502 | 49,225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92억 2,500만원(연평균 98억 4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| 3,666 | 7,024 | 10,106 | 12,928 | 15,502 | 49,225 | 9,845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최근 5년간 무공수훈자수 증감률과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,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